



제 41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차액 지급근거 마련〉
■ 이상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931호)

2024.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차액 지급근거 마련	2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상회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10. 28.

3. 회 부 일 : 2024. 10.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어선
· 어구 감척이 필요한 대상 어업을 선정하고, 그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가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감척 사업은 수산자원 회복을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경영악화로 인하여
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인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음.

그런데 감척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 자체가 매우 적어 감척
신청을 하고자 하여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폐업지원금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척 대상자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 규모별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척에
대한 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차액 지급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서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이하 “감척대상자”라 함)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근해어업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u>어업자</u> 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① ----- ----- ----- ----- <u>어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척어업자”라 한다)</u> -----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신설>	② <u>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u>

② ~ ⑤ (생략)	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종류별·규모별로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고, 제1항에 따라 감척어업자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나.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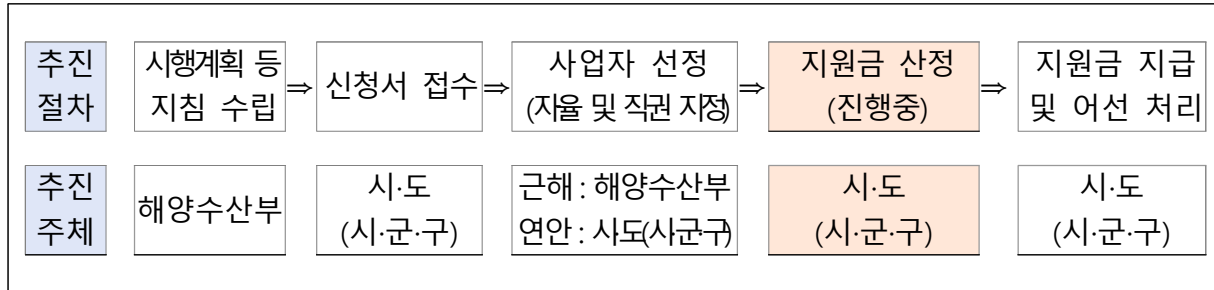
- 정부는 연근해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을 수행하고 있음.¹⁾

감척사업은 크게 시행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 → 지원금 산정(감정평가) → 지원금 지급 및 어업허가 취소의 단계로 진행되는데, 감척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이하 “감척대상자”라 함)에 대해서는 ‘폐업지원금(평년수익액 3년분)’ 및 어선·어구의 잔존가치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고, 어선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통상임금 6개월분)

1) 감척사업의 개요, 세부 추진절차 및 관련 규정은 [참고자료 1·2] 참조

지급 등이 이루어짐.

[연근해어업 감척사업 추진절차]



자료: 해양수산부

□ 이 중 폐업지원금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평년수익액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는 비율²⁾을 곱한 금액을 뜻하는데, 평년수익액은 연평균 어획량을 기초로 산출³⁾되므로 연평균어획량이 감소하는 경우 평년 수익액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폐업지원금도 감소하게 됨.

□ 그런데 최근 지속되는 수산자원 및 어획량의 감소로 인하여 수익액이 적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자연스럽게 이와 연계된 폐업 지원금도 감소하여 감척대상자가 감정평가 이후 감척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감척어선 1척당 폐업지원금은 2022년 14억 6,000만원을 기록한 이후 2023년 12억 3,600만원, 2024년 10억 1,700만원으로

2) 2024년 현재 100%임

3) 평년수익액 = 연평균어획량(최근 3년 기준)* × 평균 연간판매단가(1년) - 평년어업경비(1년)**

* 단, 변동폭이 전년도 대비 1.5배 이상일 경우 해당연도만큼 소급하여 계산한 3년 적용

** 단, 변동폭이 전년도 대비 1.5배 이상일 경우 인근 비슷한 규모, 같은종류 어업 2개이상의 평균 적용

감소하였고, 최근 5년간 주요 어종별 생산량을 보면 도루묵, 쥐치류, 오징어, 민꽃게, 참조기 등 어종 전반에 걸쳐 생산량이 감소하였음.

- 2023년의 경우 감척신청을 한 근해어선 중 28.3%가 감정평가 이후 감척신청을 철회함.

[최근 5년간 감척어선 1척당 폐업지원금 지출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척당 폐업지원금	1,163	1,243	1,460	1,236	1,017

자료: 해양수산부

[최근 5년간 주요 어종 생산량 현황]

(단위: 통, %)

품목명	‘19년(a)	‘20년	‘21년	‘22년	‘23년(b)	증감(b-a)	
						생산량	비율
도루묵	3,066	5,114	2,760	1,408	611	△2,455	△80.1
쥐치류	2,650	2,010	1,913	1,313	1,053	△1,597	△60.3
까나리	14,252	13,196	17,776	21,049	6,377	△7,875	△55.3
오징어	51,817	56,989	60,880	36,578	23,343	△28,474	△55.0
민꽃게	3,990	2,785	2,973	2,257	2,027	△1,963	△49.2
갑오징어류	8,762	5,183	6,693	7,263	4,892	△3,870	△44.2
주꾸미	3,828	4,306	3,338	2,957	2,204	△1,624	△42.4
참조기	25,741	41,039	31,562	16,400	15,117	△10,624	△41.3

자료: 해양수산부

- ☐ 이에 개정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연근해어업의 종류별·규모별로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고, 감척대상자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감척대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감척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해양수산부는 과거 폐업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별도의 감정평가 없이 법령으로 정해진 기준액으로 보상을 실시하였으나, 2021년부터 현재와 같은 개별 감척대상자에 대한 감정평가 방식으로 변경하여 폐업지원금을 산정·지급하고 있음.

이와 같은 감정평가 방식은 폐업지원금 산정에 감척대상자의 최근 어획실적 등 평년수익액을 비교적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어획실적이 적어 평년수익액이 부족한 감척대상자의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이 낮게 산정될 수 있음.

- 그런데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에서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통상 경영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감척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기후변화, 불법어업 등으로 인해 어획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폐업지원금이 감척대상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소지가 있음.

이는 곧 폐업지원금 부족을 이유로 한 감척사업의 중도 포기⁴⁾나 감척 신청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정 수준의 폐업지원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 감정평가 방식과 2021년 이전의 기준가에 따른

4) 해양수산부, 「2024년도 연근해어업 감척사업 집행지침」, 2024 - 감척대상자가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포기한 날부터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보상 방식을 혼합하여, 감척대상자가 감정평가로 산출된 폐업지원금과 법령에 따른 기준액 중 큰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척대상자에게 적정 수준의 폐업지원금을 보장하려는 것임.

□ 이와 관련, 개정안이 실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감척대상자에 대한 폐업지원금의 하한선 역할을 하는 기준액이 적정 규모로 산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과거 2021년 이전에 사용했던 기준액 산정기준⁵⁾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업종별·규모별 어업여건 및 상황에 맞는 기준액 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기준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데 있어 일정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 부칙의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임.

【 '19~'23년 연근해어선 감척 실적 현황 】

(단위: 척)

구분	'19	'20	'21	'22	'23	합계(A)	목표(B)	감척비율(A/B)
근해어선	13	53	86	67	76	295	300	98.3
연안어선	360	176	109	105	176	926	1,000	92.6
합계	373	229	195	172	252	1,221	1,300	93.9

* 자료: 해양수산부

□ 관련 정부부처의 의견으로,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수산자원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현행 어획량 기준의 폐업 지원금만으로는 어업인의 생활지원이 어려우므로, 감정평가한 폐업

5) 2020년의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기준가격은 [참고자료3] 참조

지원금이 업종별·규모별 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기준액으로 보상할
필요성이 있다는 개정안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22

참고1

연근해어업 감척사업 개요

- (목적)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구조조정(감척)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어업 경영여건 개선 도모
- (근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절차) 시행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 → 지원금 산정(감정평가) → 지원금 지급 및 어업허가 취소
 - (시행계획)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감척 대상 업종, 업종별 감척 목표 척수 등 설정
 - (사업자선정) 감척 대상 업종 중 감척 희망자 우선 선정*(자율감척), 목표 미달 시 어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대상자 직권지정**(직권감척)
 - * 자율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후 감척 포기가 가능하나 포기 시 3년 간 자율감척 신청 불가
 - ** 법령위반, 어선규모, 조업일수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 선정, 직권감척 대상자는 감척 수용 또는 불응이 가능하나 불응 시 면세유, 영어자금 신규융자 지원 축소 조치
 - (지원) 감척대상자에게 폐업지원금(평년수익액 3년분), 어선·어구 잔존 가치 보상, 어선원에게 생활안정자금(통상임금의 6개월분) 지급
 - (어선처리) 어업허가를 취소하고 어선은 폐선을 원칙으로 하되, 연근해어업 용도 외 매각 또는 어선 대체 등에 활용 가능(해수부 승인 필요)

참고2

감척사업 추진 세부 절차 및 관련 규정

□ 감척사업 추진 세부절차

1)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5년) * 법 제5조 관련	▪ 어업구조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 어업구조개선의 추진전략과 방법, 규모, 평가 등
↓	
2) 어선감척 시행계획 수립 * 법 제6조 관련	▪ 시행계획(안) → 시·도 의견조회 → 의견 검토 → 시행계획(안) 변경 → 수산조정위 심의 → 시행계획 확정 → 시·도 통보
↓	
① 감척대상어업 고지(공고) *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관련	▪ 근해어업 감척대상 업종 지정 및 신청 고지(해수부장관이 15일간 공고)
↓	
② 감척대상어업 신청(접수) * 법 제9조 관련	▪ 고지된 해당 근해어업 업종의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자단체 등은 감척 계획서를 해수부장관에게 제출
↓	
③ 감척대상 어업 직권지정(고지) * 법 제10조 관련	▪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직권으로 감척 대상 업종 지정
↓	
④ 자율(희망) 감척 실시 * 법 제11조 관련	▪ 감척대상 업종의 어업자가 감척을 신청한 경우는 당초 계획에 따라 감척을 실시 * 폐업지원금(사업지침상 기준가격), 어선·어구 감정가격 매입,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지원금(최대 6개월분) 등
↓	
⑤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 * 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3조 관련	▪ 당초 계획에 따라 자율감척 신청이 없거나 감척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잔여 척수에 대해 직권으로 감척대상 어선 지정 추진(해수부장관이 120일간 공고) * 대상자 선정기준별 배점기준 및 점수표에 따라 선정
↓	
⑥ 직권감척 대상자 이의신청 * 법 제15조 관련	▪ 감척 대상자 선정 또는 지원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정 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신청 ▪ 이의신청을 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관련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가능
↓	
⑦ 직권감척 불응자 제재 조치 * 법 제12조 관련	▪ 신규용자 제한(수산업법 제86조) ▪ 면세유 연간공급량 조정(조특법 제106조의2)
↓	
⑧ 어업허가 취소 및 지원금 지급 * 법 제13조, 제14조 관련	▪ 폐업지원금(평년수익액의 3년분 범위내) ▪ 어선·어구 감정가격 매입 ▪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지원금(최대 6개월분) 등
↓	
⑨ 매입한 어선·어구의 처리 * 법 제19조 관련	▪ 선체 및 어구는 해체하거나 소각 ▪ 기관 및 장비는 매각 → 수발기금·지자체 편입

□ 관련 규정

< 연근해구조개선법 제13조 >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2.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구체적인 산출 기준과 방법, 지원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어선·어구 감척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선·어구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단체등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근해어업을 폐업한 어업자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산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직업 교육·훈련
 2.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3. 전업 장려금의 보조 또는 융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연근해구조개선법 시행령 제5조>

제5조(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이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에 따른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2호 가목 >

2. 어업별 손실액 산출방법에 관련된 용어의 정의 및 산출기준

가. 면허어업,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손실액 산출방법에서 “평년수익액”이란 평균 연간어획량을 평균 연간판매단가로 환산한 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 연간어획량, 평균 연간판매단가 및 평년어업경비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평균 연간어획량의 산출기준

가) 3년 이상의 어획실적이 있는 경우: 법 제104조제2항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보고된 어획실적, 양륙량(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육상으로 옮긴 양을 말한다) 또는 판매실적(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받은 자가 보고된 실적 이상의 어획실적 등이 있었음을 증거서류로 증명한 경우에는 그 증명된 실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산출한 최근 3년 동안의 평균어획량으로 하되, 최근 3년 동안의 어획량은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를 기준연도

로 하여 소급 기산(起算)한 3년 동안(소급 기산한 3년의 기간 동안 일시적인 해양 환경의 변화로 연평균어획실적의 변동폭이 전년도에 비하여 1.5배 이상이 되거나 휴업·어장정비 등으로 어획실적이 없어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 동안의 평균 어획량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만큼 소급하여 기산한 3년 동안을 말한다)의 어획량을 연평균한 어획량으로 한다.

나) 3년 미만의 어획실적이 있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추정 평균어획량

(1) 면허어업: 해당 어장의 실적기간 중의 어획량 $\times$ 인근 같은 종류의 어업의 어장(통상 2개소)의 3년 평균어획량 $\div$ 인근 같은 종류의 어업의 어장의 해당 실적기간 중의 어획량

(2)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 해당 어업의 실적기간 중의 어획량 $\times$ 같은 규모의 같은 종류의 어업(통상 2건)의 3년 평균어획량 $\div$ 같은 규모의 같은 종류의 어업의 해당 실적기간 중의 어획량. 다만, 같은 규모의 같은 종류의 어업의 어획량이 없으면 비슷한 규모의 같은 종류의 어업의 어획량을 기준으로 3년 평균어획량을 계산한다.

참고3

2020년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기준액

(단위 : 천원)

어업 종류별	톤급단위(본선기준)	기준가격	비 고
중형기선저인망 (동해구 외끌이)	구분 없음	559,445	
중형기선저인망 (서남구 외끌이)	구분 없음	710,231	* 일본EEZ 입어 실적 (‘13.1월 ~’16.6월)어선은 기준가격에 11% 추가
근해트롤(대형트롤)	구분 없음	981,287	
근해트롤 (동해구중형트롤)	40톤 미만	531,782	
	40톤 이상	1,441,176	
근해선망(대형선망)	120톤 이상	2,772,846	* 선단 기준금액(본선 1, 등선 2척 이내, 운반선 - 척) * 일본EEZ 입어 실적 (‘13.1월 ~’16.6월)어선은 기준가격에 6% 추가
근해선망(소형선망)	구분 없음	556,316	* 선단 기준금액 (본선 1, 등선 1척 이내, 운반선 1척 이내)
근해채낚기	35톤 미만	239,794	* 일본EEZ 입어 실적 (‘13.1월 ~’16.6월)어선은 기준가격에 5% 추가
	35톤~65톤 미만	215,409	
	65톤 이상	249,263	
근해연승	20톤 미만	279,420	* 일본EEZ 입어 실적 (‘13.1월 ~’16.6월)어선은 기준가격에 20% 추가
	20톤~35톤 미만	372,856	
	35톤 이상	409,112	
근해안강망	35톤 미만	314,260	
	35톤~65톤 미만	424,928	
	65톤 이상	532,042	
기선권현망	200톤 미만 (선단기준)	698,463	* 선단 기준금액 (본선 2, 가공 및 운반겸용선 2척 이내, 어로보조선 2척 이내)
	200톤 이상 (선단기준)	727,061	

자료: 해양수산부, 「2020년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지침」